

이 우편물은 2021-06-08
제 3112960045628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법원청사우체국장

대한민국 KOREA

법무법인 Hannuri Law
한누리

[0660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431호 [G-Five Central Plaza]

Tel : 02-537-9500 Fax : 02-564-9889

Email : hannuri@hannurilaw.co.kr www.hannurilaw.co.kr

수 신 :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Redacted]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정로 443-83

발 신 : 법무법인 한누리 [Redacted]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431호[서초동, G-Five Central Plaza]

제 목 : 주주대표소송 피고들 [Redacted] 에 대한 보전조치 촉구

1.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소액주주들(이하 '원고 주주들')을 대리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3. 주지하시다시피 2018. 7.경 소위 '기내식 대란'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이러한 사태의 근본 원인이 기내식 공급업체의 변경과정에서 행해진 회사 이사들 [Redacted] 이하 '피고들'의 임무해태 내지 회사 기회 유용([Redacted] 前 회장 소유 회사인 금호홀딩스에 대한 1,600억 원 규모의 무이자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지원의 특혜를 얻어내기 위한 기내식 공급업체의 변경)에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4. 이에 원고 주주들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2018. 7. 13. 소제기청구를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이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8. 8. 16. 아시아나항공 이사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9524, 이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5. 하지만 회사는 이 사건 소송이 주주대표소송으로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i) 2018. 12. 31. 재판부가 관련사건인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1535271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기록송부촉탁서를 발송하자 재판기록의 열



람 등 제한신청을 하여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서 열람을 극구 방해하였고, ii) 2019. 1. 31. 원고 주주들이 사건본인인 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재판부가 2019. 2. 12. 14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자 2019. 2. 27.에서야 4주 정도 의견제출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하더니 2019. 5. 8.에야 이사회 의사록을 제외한 나머지 문서들은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iii) 재판부가 2019. 7. 22. 회사에 문서제출명령을 내리자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와 재항고까지 진행하며 자료제출을 극구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iv) 대법원이 2020. 3. 17. 회사의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7일 이내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2020. 4. 28.에야 문서를 제출하는 등, 재판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비협조 내지 방해로 일관하였습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들이 회사의 기내식 사업기회를 제3자인 금호홀딩스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였다는 점은 관련 민사사건의 문서송부촉탁 회신기록 등을 통해 충분히 드러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2020. 8. 27. 자 제재조치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으며,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5. 13. ■■■■■ 前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이후 검찰은 2021. 5. 26. ■■■■■ 前회장을 기소하였는바, 피고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7. 따라서 귀하께서는 이 사건 소송이 확정된 이후 집행을 통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미리 피고들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귀하께서 이러한 보전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고들에 대한 집행자산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하지 못하여 이 사건 소송 확정 후 집행에 실패할 경우 이는 회사 경영진의 회사에 대한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시의를 놓치지 않도록 피고들에 대한 보전조치를 즉시 진행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별지. 원고 주주목록

